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1일, 조경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조경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경우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어려웠음.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불 등 화재의 특성상 화재의 진화라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화재의 예방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비행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sup>1)</sup>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등의 공공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긴급히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위하여<sup>2)</sup> 적용 특례<sup>3)</sup>를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 준수사항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1)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6803호,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7.4.25.) 제안이유

“또한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은 제외한다) 등에서도 항공기를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의 일부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은 제외한다)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배제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제2항).”

#### 3)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

- (대 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28개)이 소유 또는 임차한 무인비행장치
- (범 위)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수색·구조, 화재 진화 등, 훈련 포함)
- (특 례)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 적용 제외(「항공안전법」 제129조)
  - ①인명·재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인구밀집지 비행, 야간비행 등 금지,
  - ②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③개인정보 수집·전송 등, ④특별비행승인(야간·비가시비행)

자료 : 국토교통부

현재 시행규칙<sup>4)</sup>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의 예시인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 진화, 응급환자 후송 외에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화재의 예방, 테러 예방 및 대응 등까지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으로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수색·탐색, 화재 대응, 조사·감시 등과 아울러 산불예찰 활동, 산불예방 또는 폭염대피 방송 수행 등 재난 예방에 무인비행장치가 활용되고 있음.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①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한다.

1.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6. 산림 방제(防除)·순찰
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 테러 예방 및 대응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 【 드론을 활용한 재난 예방 사례 】

### □ 재난 예방 사례

- (예방·방송)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불 예찰 활동 및 산불예방 공중 방송, 확산기를 활용한 폭염 대피 방송 수행



자료 : 국토교통부

이성권의원안과 조경태의원안은 적용 특례에 이와 같은 재난 예방 목적에의 활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도록 상향 입법하여 무인비행장치를 통해 재해·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한 비행의 공공목적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부령에서 화재 또는 테러의 예방 등에 대해서도 특례가 이미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